

안양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제정 2018. 4. 4 규칙 제149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규칙 중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양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불입”을 각각 “납입”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4조(「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5조(「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기”를 “규정”으로 한다.

제6조(「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7조(「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8조(「안양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안양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3호, 제15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 및 제2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3항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제10조(「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불입”을 각각 “납입”으로 한다.

제11조(「안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개정) 안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안양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의 개정) 안양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안양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의 개정) 안양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제14조(「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와 별표 17을 각각 별지 6과 별지 7과 같이 한다.

제15조(「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안양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8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1 >

■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노점상생업자금융자금관리대장

주소	성명	① 용자			② 상환				③ 잔액	비율	
		용자 번호	금액	누계	상환 회수	이자	원금	누계		①/③	②/③

※ 용자번호 - 용자 고유번호 기재

상환회수 - 상환금납입 회수 기재(월별 상환액 참조)

< 별지 2 >

■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 지정(제3조 관련)

일련 번호	시설의 종류	시설의 세분	관리부서	
			시	개인 등
1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고가도로 • 지하도로 	도로과	한국도로공사
2	철도	-	교통정책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3	주차장	-	교통정책과	
4	자동차정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터미널 • 화물터미널 • 공영차고지 • 공동차고지 	대중교통과	사업주
5	자동차 및 건설 기계검사시설	-	대중교통과 도로과	
6	자동차 및 건설 기계운전학원	-	-	경기도지방경찰청
7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광장 • 일반광장 • 경관광장 • 지하광장 • 건축물부설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과 • 공원관리과 • 공원관리과 • 도로과, 공원관리과 • 건축과 	사업주
8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공원 • 어린이공원 • 근린공원 • 역사공원 • 문화공원 • 수변공원 • 묘지공원 • 체육공원 •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관리과 • 공원관리과 • 공원관리과 • 공원관리과 • 공원관리과 • 공원관리과 • 노인장애인과 • 공원관리과 • 공원관리과 	사업주
9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충녹지 • 경관녹지 • 연결녹지 	녹지과	사업주
10	유원지	-	공원관리과	
11	공공공지	-	녹지과	
12	유통업무설비	-	경제정책과	사업주
13	수도공급설비	-	수도시설과	한국수자원공사

안양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일련 번호	시설의 종류	시설의 세분	관리부서	
			시	개인 등
14	전기공급설비	-	경제정책과	한국전력공사
15	가스공급설비	-	경제정책과	한국가스공사
16	열공급설비	-	경제정책과	사업주
17	방송·통신시설	-	-	각 방송사
18	공동구	-	도로과	
19	시장	-	경제정책과	사업주
20	유통시장및송유설비	-	경제정책과	대한송유관공사
21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 대학·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소년과 • 교육청소년과 • 교육청소년과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대학·대학교
22	운동장		체육생활과	
23	공공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 청사 • 경찰·파출소 • 우체국 • 소방파출소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과 - - - - 	경기지방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경기소방재난본부 해당기관
24	문화시설	-	문화관광과	사업주
25	체육시설	-	체육생활과	사업주
26	도서관	-	평생교육원	
27	연구시설	-	-	사업주
28	사회복지시설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사업주
29	청소년수련시설	-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30	하천	-	하천관리과	
31	유수지	-	안전총괄과	
32	화장시설	-	노인장애인과	
33	공동묘지	-	노인장애인과	
34	장례식장	-	노인장애인과	
35	도축장	-	식품안전과	사업주
36	종합의료시설	-	보건소	사업주
37	하수도	-	하수과	
38	폐기물처리시설	-	청소행정과	사업주
39	수질오염방지시설	-	하수과 환경보전과	
40	폐차장	-	대중교통과	
41	기타시설	-	도시계획 업무담당 국장이 지정	

< 별지 3 >

■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급수공사비 납부 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제 호	년도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
(항) 영업수익	(세항) 급수공사 수	(목) 신설공사 수
금 원 (₩)		
공 사 비		원
수 수 료		원
시설분담금		원
년도		
상기금액을 안양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도		
납부자(주소): 납부자 성명:		
안양시금고 안양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Fax :		
☎ :		
(급수팀 제출용)		

영수증서		
제 호	년도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
(항) 영업수익	(세항) 급수공사 수	(목) 신설공사 수
금 원 (₩)		
공 사 비		원
수 수 료		원
시설분담금		원
년도		
상기금액을 안양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납부하였으므로 영수합니다.		
년도		
납부자(주소): 납부자 성명:		
안양시금고 안양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Fax :		
☎ :		
(납부자용)		

불 입 서		
제 호	년도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
(항) 영업수익	(세항) 급수공사 수	(목) 신설공사 수
금 원 (₩)		
공 사 비		원
수 수 료		원
시설분담금		원
년도		
상기금액을 안양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납입하였으므로 영수합니다.		
년도		
납부자(주소): 납부자 성명:		
안양시금고 안양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Fax :		
☎ :		
(은행보관용)		

영수필통지서			내역	
제 호	년도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	신설공사 수 입	₩
(항) 영업수익	(세항) 급수공사 수 익	(목) 신설공사 수 익	개조공사 수 입	₩
금 원 (₩)			수수료수입	₩
공사비	원		시설부담금	원
수수료	원		계	₩
시설분담금	원			
<p>년도</p> <p>상기금액을 안양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로 납입하였으므로 영수 통지 합니다</p> <p>년도</p> <p>납부자(주소): 납부자 성명: 안양시금고 안양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p>			<p>(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p> <p>주소:</p> <p>성명:</p>	
<p>Fax : ☎ : (수도요금팀 보관용)</p>			<p>Fax : ☎ : (수도요금팀 보관용)</p>	

< 별지 5 >

■ 안양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카드

(앞면)

과명															성명		
															직명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출장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공가
월																결근	
																병가	
월																귀가	
																연가	
월																지각	
																조퇴	

(뒷면)

근무상황카드														
구분 일자	종별	필요한날자수및시간			가는곳	사유 또는 용무	결재를 바랍니다							
		일시부터	일시까지	날자수 시간			신청또는 수명자	주무 과장	총무 과장	주무 국장				
..														
..														
..														
..														
..														
..														
..														
신분상의 이동		발령연월일			소 속	발령사항	비고							
		년 월 일												
		년 월 일												

0201-20B

245mm×110mm

78. 12. 29 승인

(특급인쇄용지 120g/m²)

< 별지 6 >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15]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제15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 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 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별지 7 >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17]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예정직무 (「지방공무원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련)

응시자격 요건(제15조제10항 관련)

1. 항측관리요원

직위군	응시자격요건
나군	1. 지도제작기능사, 도화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 측량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 분야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다군	1. 지도제작기능사, 도화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 측량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화생방요원

직위군	응시자격요건
나군	1. 화생방 관련분야 학사학위와 자격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문직으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화생방 관련분야 직종 예시 • 화학기술분야(화학분석, 화공안전관리 기능자 등)에 종사한 사람 • 생물학, 생화학, 세균분야 등에 종사한 사람 2. 원자력분야 학사학위와 자격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군화학 병과로 2년 이상 근무한 소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적용을 받은 군은 군화학병과 또는 전투병과(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로 2년 이상 근무한 소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의 전문경력관

직위군	응시자격요건
가군	1. 4년제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5급 특채가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6·7급 특채가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군	1. 4년제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6·7급 특채가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8급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군	1. 관련분야 8·9급 특채가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학교 이상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 비교: 1. 응시요건 중 가군,나군 및 다군에 상당하는 직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 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3. 직위군별로 상위 직위군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직위군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별지 8 >

■ 안양시 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납입고지서(제8조 관련)

수납은행 영수필증
보관용

구청 납입고지서
보관용

구금고 영수필통지서
보관용

납세자 영수증
보관용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장)세외수입	(관)경상적 세외수입					
(항)수수료	(목)일반폐기물수수료					
십 억 천 백 천 만 천 백 십 일						
일 금			원 정			
적 요	종량제규격봉투판매대금					
용량별구입	5L	10L	20L	50L	100L	
수 량						
금 액						
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						
수납취급자			(인)			
납입자 성명(상호)						
주소:						

(관급규격봉투대금)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장)세외수입	(관)경상적 세외수입					
(항)수수료	(목)일반폐기물수수료					
십 억 천 백 천 만 천 백 십 일						
일 금			원 정			
적 요	종량제규격봉투판매대금					
용량별구입	5L	10L	20L	50L	100L	
수 량						
금 액						
납부장소: 시중은행 공과금 수납창구 (구금고 11-1호 계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양시 ○○구청장						
납입자 성명(상호)						
주소:						

(관급규격봉투대금)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장)세외수입	(관)경상적 세외수입					
(항)수수료	(목)일반폐기물수수료					
십 억 천 백 천 만 천 백 십 일						
일 금			원 정			
적 요	종량제규격봉투판매대금					
용량별구입	5L	10L	20L	50L	100L	
수 량						
금 액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안양시 ○○구 금고 귀하 안양시 ○○구 수입금 출납원 귀하						
납입자	주소:					
	상호:		성명:			
출납원	(인)	출납원	(인)			
수납원	(인)	수납원	(인)			

(관급규격봉투대금)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장)세외수입	(관)경상적 세외수입					
(항)수수료	(목)일반폐기물수수료					
십 억 천 백 천 만 천 백 십 일						
일 금			원 정			
적 요	종량제규격봉투판매대금					
용량별구입	5L	10L	20L	50L	100L	
수 량						
금 액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금용기관			(인)			
납입자 성명(상호)						
주소:						

(관급규격봉투대금)